

의안 번호	2600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발의일자: 2026. 8. 21.(금)
- 나. 발 의 자: 김성민 의원 외 8명
- 다. 회부일자: 2026. 8. 21.(금)
- 라. 심사일자: 2026. 9. 1.(화)

2. 제안설명 요지(김성민 의원)

-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제정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품위 유지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의원 징계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1조)
- 나. 징계사유: 겸직 위반, 음주운전, 성비위, 부정청탁 20개 항목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명시(안 제2조)
- 다. 징계양정: 위반행위 및 고의·과실 경중에 따른 세부 징계기준 마련(안 제3조 및 별표 1~3)
- 라. 징계의결: 신속한 징계절차 이행 등을 위한 규정 마련(안 제4조)
- 마. 징계결과 공개: 징계처분 후 즉시 의회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개(안 제5조)

4.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1절(제98조~제101조)

※ 참고자료: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의자치법규과-2131(2026. 5. 4.)호와 관련)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제정 권고에 따라, 기존¹⁾에 다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던 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비위 행위 유형과 양정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제정 타당성이 매우 높음.
-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징계에 관하여 해당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²⁾으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1절(징계)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의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반영하여 입안되었음. 따라서 상위법령을 위배하거나 저촉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규칙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내용적·절차적 하자가 없음. 또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 명백하므로 규칙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을 준용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제9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제7조에 따른 영리행위 제한의 위반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제95조(대상과 시효중단 등) ① 의원징계(이하 “징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배하여 의회의 위상을 손상한 사실이 있는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1. 회의장의 질서유지 의무
2. 법 제44조 각 항에 따른 직무성실, 청렴 및 품위유지, 직위남용·이권개입 금지 등의 의무
3. 법 제98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11절 징계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